

## 교원노조와 결맞은 권한, 사학경영인도 필요

홍성대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장

교원은 교육활동의 핵심이다. 그만큼 교원의 자질이나 역할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실제로 모든 교육 당사자들은 교육의 질이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주장에 동감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국가간의 첨예한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뿐이며,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길은 사명감을 지닌 유능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의 교원 정책이 일관성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정책이 국가 장래를 결정지을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군사부(君師父)일체라는 오랜 문화전통에 따라,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교원을 존경의 대상인 스승으로 받고 있다. “세 발짝 물러서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만큼 스승은 높고 의젓한 곳에 자리하여 모든 언행의 모범이었다. 이러한 국민정서 때문에 그 동안 우리 국가 사회는 교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향상, 신분보장, 처우개선 등을 특별히 법률로써 확고히 보장해 왔다. 사학을 설립·운영하는 우리 사학인들 역시 교원의 권익이 보호되고 교원의 권위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일념에서 그와 같은 국가 사회의 의지에 협력해 왔다. 특히 우리 사학인은 한번 신규 임용된 교원이 이동 없이 한 학교에

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학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교원의 확보차원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원의 자질을 재평가하여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존경하는 스승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무엇보다 앞섰기 때문에 교원들의 완전한 정년보장을 우선적으로 지켜 왔던 것이다. 이처럼 교원들은 노동운동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일찍부터 법률로 보장받아 왔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노조활동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어느 모로 보더라도 어울리지 않는 ‘스승들의 노동조합’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노총) 산하의 전교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의 한국교원노조(한교조), 그리고 서울교원중등교사회가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되면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또 여러 개 생겨, 결국 5개 이상의 단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직사회가 사분오열 되고, 교원들간의 반목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교무회의가 마치 여야로 갈린 국회의사당처럼 격돌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교원단체들 사이에 선명성, 차별화 경쟁이 일어나 과격행동

을 일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그 결과는 곧 교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법인 등 학교 구성원간의 반목과 분열로 이어지고, 교육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쳐 그 피해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단은 혼란에 빠지고 교육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사학경영인들은 그 동안 교원노조의 폐해와 그 부당성을 역설하고, 교원의 노조활동 허용을 저지하는 데 적극 노력했으나, 우리의 주장은 끝내 묵살되고 말았다. 원래 교원노조 허용문제는 IMF가 요구한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2월 6일 소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간의 타협과정에서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수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교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자 정부는 이를 즉각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어이 없게도 교원노조 허용문제를 정치적 흥정의 재물로 삼았던 것이다.

사안의 핵심당사자인 40만 교원이나 전국의 학부모들, 교육관계 여러 단체나 사학경영인들의 어느 누구도 대표로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노사정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라느니 역사적 선언이라느니 떠들어 댔다.

이와 같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정부·여당에는 끝내 피할 수 없는 멍에가 되어 지난 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기습적으로 변칙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학경영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정치적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 교원들은 노조운동을 통하여 온갖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이미 전교조는 사학관련 19개의 단체협약안을 내놓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교원인사위원회 및 예·결산자문위원회 위원 교무회의에서의 선출, 제단전입금 확충 등을 요구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도 아닌 이와 같은 협약

안을 내놓고 때를 쓸 작정이다.

우리 사학경영인들은 여기에 대응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기에 결국 교원노조의 온갖 무리한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형평성을 잃은 채 극심한 혼란에 빠진 교육현장에서는 공평한 단체협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학경영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백년대계인 고품질의 교육 발전을 염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사학경영인들은 학교마다 질 높은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교육 당사자들간의 반목과 대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단체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원들에게도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원노조 허용을 요구해 온 전교조나 정부당국은 ILO나 OECD 회원국들을 예로 들면서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교원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그런 논리를 내세워 정부·여당은 교원노조를 허용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ILO나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학경영인들에게도 교원노조 허용에 걸맞은 권한을 주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일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 설립을 주장해 온 교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논리이며,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우리 사학경영인들이 요구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한다. 외국법을 수용하려면 차라리 미국법이나 일본법을 그대로 따를 일이었다. 그런데도 노동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정할 때에는 외국노동기준을 따르고,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기준을 정할 때에는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전혀 무시해 버렸다. 세상에 이렇게 편협한 법이 또 어디에 있는가? 어느 누가 그런 법을 기꺼이 받아들여 따르겠는가?

무작정 때를 쓰거나 버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으로 방관할 문제는 더욱 아닐 것이다. 우선 교원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한결같이 실시하고 있는 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 등이 우리 나라 교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 있다면 마땅히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단의 혼란과 교육의 황폐화를 막아야 할 무한 책임을 지닌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일 교육부가 이를 회피한다면 정치권이라도 나서야 한다. 우리가 정당하고 공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형평성이 깨지면 우리의 교육현장은 황폐화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뒤늦게 후회해 보았자 이미 때는 늦는다. 수십 년이 걸려도 잘못된 현장을 바로 잡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교육임을 다 같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자랑스러운 다수의 선생님들은 사랑과 열정으로 사도(師道)를 바르게 걸어 왔고, 봉사와 헌신으로 교단을 굳게 지켜왔다. 그러한 숭고한 스승상이 몰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당한 제도 밑에서 무참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분들의 고귀한 스승상을 더욱 찬양 고무시키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현상 유지만은 했어야 옳은 일이다. 그런데도 사도보다 노동자의 길을 걷겠다는 일부 극소수 교원들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교원노조를 허용함으로써 신성한 교육자를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대 다

수의 선생님이 노동자 아닌 '전문직'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육의 장래에 희망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와 교원노조 사이에 단체협의권과 협의내용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스승이면 스승이고, 노동자면 노동자 어느 한쪽이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스승의 신분으로서 예우와 혜택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교원들에게는 양손에 떡을 쥐어 주고, 사학경영인들에게는 빈손 쥐고 참으라고 한다면 누가 이를 따르겠는가? 지금이라도 교원들이 노동권을 포기하고 본래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적극 나선다면 우리 사학경영인들은 스승으로서의 권리와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교원은 어디까지나 스승이지 결코 노동자가 아니다"는 필자의 신념에는 아직도 변화가 없다. **필자**

#### 홍성대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시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학교법인象山學園(상산고등학교) 이사장과 재단법인 明孝재단(명봉도서관)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數學의 定石』 외 다수가 있다.